

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제정	1985. 2. 21	조례 제 322호
개정	1989. 12. 9	조례 제 574호
	1993. 7. 16	조례 제 769호
	1997. 1. 15	조례 제 993호
	1997. 5. 13	조례 제1031호
	2000. 8. 18	조례 제1204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 12. 30	조례 제1818호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 <개정 2011. 12. 30>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학교, 민간단체, 독지가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. <개정 97. 5. 13, 2000. 8. 18, 2018. 7. 31>

1. 일반장학생 :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
2. 특기장학생 : 품행이 단정하고 예·체능 및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

제3조(추천)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

제4조(선발등)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30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,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30>

③ 제1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통장의 재산세 납부실적과 근속기간, 자녀의 학업

성적 및 입상 경력 등으로 하되,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97. 5. 13>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 <개정 97. 1. 15, 2018. 7. 31>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매분기 공납금 납입시기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. <개정 2000. 8. 18, 2011. 12. 30>

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삭제 <2000. 8. 18>
 2. 삭제 <2000. 8. 18>
 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 4.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 5. 삭제 <2000. 8. 18>
 6.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
-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<개정 97. 1. 15>

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12. 9>

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3. 7. 16>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5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8. 1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2. 30 조례 제18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